

#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608호
----------	---------

제출년월일 2025. 4. 8.  
제출자 배강민, 이희성 의원

## 1. 개정이유

-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지급의 근거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5호)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협의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4. . ~ 2025. 4. .

나) 예고결과 :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5. 3. . ~ 2025. 4. .

나) 협의결과 :

### 3)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지원 등)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율방범대법 )**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2866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9조(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양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286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70호, 2023. 9. 27., 전부개정]

경기도 김포시(자치행정과), 031-980-22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연합대와 그 소속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른 방법대 및 연합대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김포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부터 <7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70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